

학교법인 장춘학원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인	감사정수	2인
재적이사	8인	재적감사	2인
출석이사	7인	출석감사	1인

1. 일시 : 2022. 4. 29.(금) 14:00~15:20 (회의소집 통보일 : 2022. 4. 20.)

2. 장소 : 안동과학대학교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 임원	이사 7인	신정용, 권기덕, 권재주, 임규봉, 서재수, 심용선, 김선웅	
	감사 1인	최진	
불참 임원	이사 1인	김미현	
	감사 1인	금정호	

4. 안건

- 1)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2)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2023학년도 대학 학사구조(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6) 기타 사항

5. 회의내용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개회시간이 되어 심홍재 사무국장이 참석임원을 보고하자 신정용 의장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심홍재 사무국장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이사회의 구성과 업무, 회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다.

간서명	의장	신정용	이사	심용선	이사	김미현
-----	----	-----	----	-----	----	-----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1호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
홍재 사무국장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1호)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및 부담금액을 비롯한 수입과 지
출 내역 등 2021회계연도 법인 결산 총액 23,487,759원에 대한 상세 내역과 사학기
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교육부 결산 유의사항을 근거로 작성된 법인
회계 결산 현황,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배부된 회의자료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다.

최 진 감사는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21회계연
도 법인의 일반사무 및 회계처리는 모두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또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음을 보고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권재주 이사는 외부 회계감사와 내부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1회계연도 법인
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심용선 이사는 권재주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서재수 이사는 심용선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1호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용
선 이사의 동의와 서재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
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2호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심
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2호)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및 부담금액, 코로나19에 따른 학
교 운영과 재정상황, 미사용차기이월 자금 중 명시이월 내역 등 2021회계연도 결
산 총액 26,706,895,246원(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내부거래 제거)에 대한 상세
내역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교육부 결산유의사항을 근거
로 작성된 교비회계 결산 현황,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배부된 회
의자료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다.

간서명	의장	신정용	이사	심용선	이사	김현우
-----	----	-----	----	-----	----	-----

최 진 감사는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자료 등을 감사한 결과, 2021회계연도 대학의 일반사무 및 회계처리는 모두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과 또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음을 보고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김선웅 이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졌고, 내부감사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적정하다고 판단된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임규봉 이사는 김선웅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서재수 이사는 임규봉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2호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규봉 이사의 동의와 서재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3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3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학교법인 장춘학원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2조 등 개정·시행에 따른 법인 정관 제59조, 제66조, 제70조의5, 제70조의6, 제72조, 제77조 등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배부된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임규봉 이사는 상위법령인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인 정관의 변경 조항을 적절히 반영한 정관 변경·개정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권기덕 이사는 임규봉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김선웅 이사는 권기덕 이상의 동의에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3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제66조(징계의결), 제72조(임용), 제77조(징계 및 재심청구) 및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권기덕 이사의 동의와 김선웅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간서명	의장	김선웅	이사	심홍재	이사	임규봉
-----	----	-----	----	-----	----	-----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 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4호 2023학년도 대학 학사구조(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4호) 2023학년도 대학 학사구조(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학사구조 조정 관계 규정과 학과평가 결과, 학과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하여 대학발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2023학년도 대학 학사구조(학생정원) 조정 계획을 배부된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2023학년도 대학 학사구조(학생정원) 조정 계획(안)

구분(인원)	학과명(입학정원)
유지	간호학과(216), 물리치료과(90), 치위생과[야간](17), 뷰티아트과(25), 반려동물케어과(25), 바이오험프과(20), 원예조경과(20), 항공보안과(25), 스포츠레저과(25), 축구과(25)
감원(35)	바이오백신제약과(55), 치위생과[주간](50), 호텔조리과(20), 건설정보과[주간](25), 건설정보과[야간](22), 소방안전과(20), 사회복지과[주간](25)
증원(5)	사회복지과[야간](25)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임규봉 이사는 대학의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학과 평가와 학과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발전 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2023학년도 대학 학사구조(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권기덕 이사는 임규봉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심용선 이사는 권기덕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이사는 의안 제4호 2023학년도 대학 학사구조(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기덕 이사의 동의와 심용선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5호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다.

(의안 제5호)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권재주 이사는 신정용 의장과 서재수 이사, 심용선 이사를 이사회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으로 선출할 것을 개진하다.

권기덕 이사는 권재주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간서명	의장	신정용	이사	심용선	이사	권기덕
-----	----	-----	----	-----	----	-----

김선웅 이사는 권기덕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권기덕 이사의 동의와 김선웅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間) 서명 임원으로 신정용 의장, 서재수 이사, 심용선 이사를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6호 기타 사항을 상정하고 사무국장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6호) 기타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하다.

임원일동은 심홍재 사무국장으로부터 법인 및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시다.

6. 폐회선언

신정용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15:20)

학교법인 장춘학원 의장 신정용

신정용

이사 권기덕

권기덕

이사 권재주

권재주

이사 임규봉

임규봉

이사 서재수

서재수

이사 심용선

심용선

이사 김선웅

김선웅

감사 최진

최진

(의안 제3호) 정관 변경(개정)에 관한 사항

현행 정관	개정(안)
<p>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 위원회는 <u>7명</u>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7.04.27., 2017.09.22.></p> <p>② (생략)</p> <p>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7.04.27.></p> <p>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u>최소 1명</u> 이상 포함할 것</p> <p>2. 3. (생략)</p> <p><신설></p>	<p>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 ----- ----- 9명 ----- <개정 2017.04.27., 2017.09.22., 2022.04.29></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 ----- <u>최소 2명</u> ----- <개정 2022.04.29.></p> <p>2. 3. (현행과 같음)</p> <p>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04.29.></p>
<p>제66조(징계의결) ① (생략)</p> <p>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u>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u>.</p> <p>③·④ (생략)</p> <p><신설></p> <p>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66조(징계의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임면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u>. <개정 2022.04.29.></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9.></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간서명	의장	123698	이사	신동수	이사	김재우
-----	----	--------	----	-----	----	-----

현행 정관	개정(안)
<p>제72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u>신규임용</u>, <u>승진</u>, <u>승급</u>, <u>전직</u>, <u>전보</u>, <u>강입</u>, <u>휴직</u>, <u>직위해제</u>, <u>복직</u>, <u>면직</u>, <u>해임</u> 및 <u>파면</u>(이하 “<u>임용</u>”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72조(임용) ① ----- <u>신규임용</u>, <u>승진</u>, <u>승급</u>, <u>전직</u>, <u>전보</u>, <u>강입</u>, <u>휴직</u>, <u>직위해제</u>, <u>정직</u>(<u>停職</u>), <u>강등</u>, <u>복직</u>, <u>면직</u>, <u>해임</u> 및 <u>파면</u>(이하 “<u>임용</u>”이라 한다)은 ----- -----. <개정 2022.04.29.></p>
<p>제77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u>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u>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p>	<p>제77조(징계 및 재심청구) ----- ----- <u>사립학교법</u>을 ----- -----. <개정 2022.04.29.></p>
	<p>부칙<2022. 4. 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간서명	의장	123456	이사	신용수	이사	김민우
-----	----	--------	----	-----	----	-----